

FSS/2112-12 :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6.30.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A사(이하 ‘회사’)는 ‘07년 그룹계열사의 골프장 개장과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골프장회원권을 수취하는 등 수차례 취득과 처분 등을 거쳐 ’12년말 33구좌를 보유하고 장부가액은 254억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프장회원권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12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는 109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57% 하락하였다.

*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동아회원권거래소의 공시시세평균 등 활용

회사는 동 골프장회원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12년말 동 회원권의 손상검사 시 현출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B사업부문의 평가금액이 회원권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예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기와 그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동 회원권이 B사업부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 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금 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12년말 무형자산을 145억원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66 및 67에 따르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다.

①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할 수 없다.

②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동 골프장 회원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로부터 건설자재 거래대금을 받는 대신에 골프장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목적으로 동일 골프장 회원권을 30구좌나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회사는 동 회원권을 3년간 최대 사용가능 횟수의 7.5%만을 사용한 바, 동 골프장 회원권이 현금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에 속하지 않으며 B사업부문의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징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외부감사인은 타사업부문의 골프장 회원권은 개별적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손상징후를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골프장 회원권은 개별적인 손상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회원권 취득경위나 실제 사용현황, 관계사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권 손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골프장 운영 계열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고,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가중으로 향후 존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

5. 시사점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손상판단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는 자산의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감사회사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경위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